

재단법인 성모성심수도회

(2024. 제 5차 이사회회의록)

1. 회의 통지일 : 2024년 12월 11일
2. 회의 일시 : 2024년 12월 16일 (AM.10:00~11:00)
3. 회의 장소 : 본 회의실
4. 재적이사정수 : 5명
5. 참석이사 : 5명(한지영, 한보부, 이민숙, 서순원, 이경희)
6. 불참이사 : 없음
7. 개최 정족수 : 재적 이사의 3분의 2
8. 의결 정족수 : 참석 이사의 3분의 2
9. 안건 :
 - 1) 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 2024년 제2, 3, 4, 5차 추경 예산(안) 승인 건
 - 2) " 2024년 본 예산(안) 승인 건
 - 3) " 2025년 본 예산(안) 승인 건
 - 4) "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건
 - 5) " 취업규칙 개정(안) 승인 건
 - 6) "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시설장 임·면(안) 승인 건
 - 7) 법인 산하 유치원 2024학년 제3차 추경 예산(안) 승인 건

10. 회의 내용

1) 성원보고 및 개최선언

의장 한지영 대표이사가 의장석에 임하여 임원의 성원됨을 확인하고 개최를 선언하다.

2) 의장 인사

• 의장 한지영 : 오늘 이사회회의는 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 2024년 제2,3,4,5차 추경 예산(안), 2024년 본 예산(안), 2025년 본 예산(안), 운영규정 개정(안), 취업규칙 개정(안),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시설장 임·면(안), 법인 산하 유치원 2024학년 제3차 추경 예산(안) 승인에 관한 안건으로 개최하겠습니다.

3) 전차 회의록 낭독

전차 회의록을 요약 낭독하고 이의 여부를 묻은 결과 이사 전원이 "이의 없습니다"라고 답하여 전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 승인키로 선포하다.

4) 안건 심의

• 의장 한지영 : 이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 안건. 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 2024년 제2, 3, 4, 5차 추경 예산(안) 승인 심의>

의장 한지영, 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 2024년 제2, 3, 4, 5차 추경 예산(안) 승인을 심의 상정하고 이민숙 이사에게 제안 설명을 요구하다.

• 이사 이민숙 : 고용보험 요율 변동에 따른 정산보험료와 사업수입, 보조금수입, 장애인 고용장려금 반영으

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의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별 2024년 2차 추경 예산(안)

단위:(천원)

시설명		2024년 1차예산	2024년 2차추경	증감	추경사유
성동	성모주간보호센터	364,423	371,970	▲7,547	- 사회적응훈련사업 수입증가, - 인건비 감소
광명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치료바우처	313,464	240,384	▼73,080	- 제공인력 변동(휴직 서비스제공 감소)에 따른 예산 감소
	초록지역아동센터	261,264	284,261	▲22,997	- 추가 신규 종사자 입사로 인한 인건비 증가 - 외부지원사업 선정

■ 시설별 2024년 3차 추경 예산(안)

단위:(천원)

시설명		2024년 2차추경	2024년 3차추경	증감	추경사유
성동	성동종합사회복지관	3,127,000	3,154,000	▲27,000	- 이용료 수입 감소 - 기타보조금 수입,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증가 - 인건비 증가, 운영비 증가, 사업비 증가, 감소
	아이꿈누리터	190,270	186,570	▼3,700	- 4분기 추가운영비 지원, 인건비, 급식비 반납금 발생
	성모다움	598,500	600,000	▲1,500	- 2차 추경 예산 대비 0.3% 증액, - 문화행사 자부담 증가 및 후원금 증가, 고용보험료 인상에 따른 법 인 지원금 증가, 세출 감소에 따른 예비비 증가
	성동보호작업장	800,109	829,332	▲29,223	- 보조금 및 전입금 수입 증가와 사업비 지출 증가
	성동주간보호센터	298,396	299,916	▲1,520	- 바자회, 사단법인 인카나눔 등 비지정후원금 증가로 인한 예산 증가, 이용인 종결 및 수급 가정 이용인 입소, 급식 인원 감소, 비품 구입을 위한 금액 증가, 냉방비 지원 및 금액 감소 등
광명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관	431,203	431,203	0	- 단시간 근로자 인건비 확정예산반영 - 초과근무수당 집행증가로 인한 예산반영 - 고용보험 요율변경으로 인한 자부담반영 - 승강기 모니터설치로 시설장비유지비 추가반영
	광명시립 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640,761	643,578	▲2,817	- 고용보험을 변동에 따른 정산보험 료 법인전입금 신청액 예산 편성 - 전년도이월금 누락분 반영
	밝은빛 주간보호센터	490,878	502,728	▲11,850	- 실인원 변동으로 인한 세입 증가, 외부지원사업 수행으로 인한 사업 비 예산 감소 반영
성남	수정노인종합복지관	8,332,410	8,461,010	▲128,600	- 인건비/급여 감액, 고용보험 요율 변경에 따른 정산료 반영 - 경상보조금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 한 조정 - 수용비 및 수수료 및 노후 차량 정

시설명	2024년 2차추경	2024년 3차추경	증감	추경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에 따른 운영비 조정 - 노후시설 공사에 따른 재산조성비 조정 - 이용자 증가에 따른 경로식당 및 마당 1~5호점 사업비 증액 - 신규외부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증가

■ 시설별 2024년 4차 추경 예산(안)

단위:(천원)

시설명	2024년 3차추경	2024년 4차추경	증감	추경사유	
성동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3,780,466	3,781,800	▲1,3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 사업비, 기타보조사업비에 따른 세출 감소 및 사업수입, 기타 보조사업비에 따른 수입 감소 - 기능보강 자동화재탐지설비 12월 추가 선정으로 인한 25년도 집행 예정
	사회서비스팀	4,533,606	4,077,496	▼456,110	- 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특수교육치료지원사업 감소
광명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지원	7,332,412	7,332,412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DC)관리 수수료 지출 예산 반영 - 활동지원사 문화체험 미실시에 따른 예산 반영 - 활동지원사 문화체험 미실시에 따른 문화체험 수당 반영 - 활동지원사 데이터지원비 인원 증가에 따른 예산 반영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	1,805,155	1,832,348	▲27,1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장려금 신청에 따른 고용보험 상충분 법인 지원에 따른 증액편성 - 고용장려금 22년, 23년지급으로 인한 증액편성 - 생산품 재료비 지출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 - 외부 장애인생산품판매 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정정으로 인한 반환금 감액편성
	광명시립 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923,201	930,293	▲7,0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후원금 수입 및 지출 증가 -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고용보험 정산분 납입으로 인한 수입 및 지출 증가
성남	독거노인종합센터	6,212,072	6,364,991	▲152,919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확정 내시 반영에 의한 증액 및 비정후원금 수입액 반영에 따른 증액

■ 시설별 2024년 5차 추경 예산(안)

단위:(천원)

시설명	2024년 4차추경	2024년 5차추경	증감	추경사유	
광명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4,982,646	5,235,438	▲252,7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향상 보조금 신규선정에 따른 반영 - 고용장려금 지원으로인한 법인전입금 증가

• 이사 한보부 :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청합니다.

이사 서순원, 원안의 승인을 동의하다.

이사 한보부, 이경희, 이민숙, 이사 서순원의 동의안에 찬성하다.

의장 한지영, 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 2024년 제2,3,4,5차 추경 예산(안) 승인하는 안을 원안대로 의결 선포하다.

<제2 안건. 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 2024년 본 예산(안) 승인 심의>

의장 한지영, 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 2024년 본 예산(안) 승인을 심의 상정하고 이민숙 이사에게 제안 설명을 요구하다.

- 이사 이민숙 :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시설로 2024년 9월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추진사업 모집 공고에 의하여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선정되어 2024년 본 예산(안)을 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세한 것은 의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별 2024년 본 예산(안)

단위:(천원)

시설명		2024년 본예산	내용
성동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	117,631	-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선정에 따른 신규 사업

- 이사 이경희 : 신규 사업이니 만큼 2025년에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를 바라며,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청합니다.

이사 서순원, 원안의 승인을 동의하다.

이사 한보부, 이경희, 이민숙, 이사 서순원의 동의안에 찬성하다.

의장 한지영, 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 2024년 본 예산(안) 승인하는 안을 원안대로 의결 선포하다.

<제3 안건. 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 2025년 본예산(안) 승인 심의>

- 의장 한지영 : 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의 2025년 본 예산(안) 승인을 심의 상정하고 이민숙 이사에게 제안 설명을 요구하다.

- 이사 이민숙 : 2025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

2025년 본 예산(안)은 지자체 사업비,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보험 요율 상승에 따른 법인 지원금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각 시설별 본 예산(안) 내용은 붙임의 의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별 2025년 본 예산(안)

단위:(천원)

시설명		2024년 추경예산	2025년 본예산	증감	증감사유
성동	성동종합사회복지관	3,154,000	3,115,000	▼39,000	- 보조금, 이용료수입, 비지정후원금, 이월금 감소 - 인건비, 시설비(자산취득비), 사업비(서비스지원사업, 지역복지사업), 기타보조사업 감소
	성모다움	600,000	656,500	▲56,500	- 3차 추경 예산 대비 9.4% 증액
	아이꿈누리터	186,570	190,562	▲3,992	- 2025년 인건비 승급 호봉 반영
	성동장애인복지관	3,781,800	3,650,724	▼131,076	- 사업별 사업비, 시설장지유지비에 따른 세출 감소 및 보조금, 후원금 미공모에 따른 수입 감소
	성동장애인복지관 사회서비스팀	3,670,929	3,795,179	▲124,250	- 사업수입(2024년도 대비 활동지원 단가 및 인력) 증가 - 인건비,운영비,예비비 증가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124,186	122,393	▼1,793	- 운영비, 예비비 감소 - 사업비 증가

시설명		2024년 추경예산	2025년 본예산	증감	증감사유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207,411	185,408	▼22,003	- 사업비 증가 - 이월금 2024년도 발달재활 전담인력 채용으로 사업비 사용 증가
	특수교육치료지원서비스	89,172	98,831	▲9,659	- 전년도 이월금 증가 - 사업비 증가
	성동주간보호센터	299,916	300,899	▲983	- 호봉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보조금 및 신규 이용인 입소에 따른 사업비 증가, 사업 종료 및 비품 구입비 등으로 인한 예산 감소 - 직원역량강화사업비- 기타운영비 항목으로 사업이동에 따른 예산 변동
	성모주간보호센터	371,970	369,509	▼2,461	- 보조금, 전입금, 인건비, 재산조성비 증가 - 후원금 수입, 이월금, 사업비 감소
	성동보호작업장	829,332	849,436	▲20,104	- 2025년 종사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보조금 변동, 이월금 증가
	성모보호작업장	661,809	632,046	▼29,763	- 사업수입, 후원금 수입, 재산조성비 감소 - 장애인 고용장려금 반영
	공동생활가정 민음의집	116,109	107,987	▼8,122	- 보조금, 후원금, 이월금 감소 - 인건비, 운영비, 재산조성비 감소 - 사업비 증가
	공동생활가정 소망의집	103,284	101,822	▼1,462	- 인건비, 사업비 증가, 예비비 감소
	공동생활가정 사랑의집	117,416	110,333	▼7,083	- 입소비용수입, 보조금 증가 - 후원금 감소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증가 - 임무추진비, 재산조성비, 예비비 감소
	공동생활가정 기쁨의집	113,379	110,695	▼2,684	- 입소비용수입 감소 - 보조금, 후원금 증가 - 인건비, 사업비 증가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	117,631	314,983	▲197,352	- 2024년 1개월 사업 진행 예산을 2025년 사업 진행으로 인한 예산 증가
	광명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5,235,438	5,071,927	▼163,511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지원		7,332,412	7,399,892	▲67,480	- 이차이율 및 단가 변경으로 인한 예산반영 - 직원연수 비용 변동으로 인한 예산 반영 - 교육용장비 구매 비용 변동으로 인한 예산 반영 - 사업비(특별강좌, 직무교육비, 나들이)증가로 인한 예산 반영 - 홍보비 비용 감소로 인한 예산 반영 - 세출 예산 확정 후 반영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		1,832,348	1,953,103	▲120,755	- 신규 종사자 추가 채용 및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액 편성 - 24년 기능보강 및 외부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예산 반영 - 고용보험 상승분 지원에 따른 예산 반영 - 24년도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에 따른 예산 편성 - 이용인 재활프로그램비 상승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 - 전년도 이월금 예산에 따른 예산편성
광명시립 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930,293	938,415	▲8,122	- 종사자 호봉 승급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적용 - 외부지원사업 종료로 인한 사업비 및 후원금 감소 반영 - 이월금 조정으로 인한 감소

시설명		2024년 추경예산	2025년 본예산	증감	증감사유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관	431,203	464,362	▲33,159	- 종사자 호봉승급 적용으로 인한 인건비 예산 반영 - 공공요금 단가 상승으로 인한 예산 반영 - 강좌사업 신설·변경·폐강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반영
	광명시립 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643,578	712,026	▲68,447	- 직업재활시설 시도보조금 교부액 및 종사자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교부액 증가 - 직업재활시설 사업비 예산조정
	밝은빛 주간보호센터	502,728	524,307	▲ 21,579	- 2025년 보조금 및 인건비 호봉상승분 반영, 기타보조금사업 종료에 따른 예산 감소, 실인원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예산 반영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바우처	240,384	174,864	▼65,520	- 제공인력 조정 및 변화로 인한 예산 반영 - 환경개선 공사 완료로 인한 예산 조정 및 자산취득 예산 반영
	초록지역아동센터	284,261	333,524	▲49,263	- 장애통합사업 추가교사지원으로 사업비 증가 - 25년도 외부지원사업 미반영
성남	수정노인종합복지관	8,461,010	8,608,900	▲147,890	- 사업수입, 후원금, 인건비, 업무추진비, 사업비 증가 - 2024년도 고용보험료 증가에 따른 법인지원금 일시적인 증가액 차감하여 2025년도 확정금액 반영 - 운영비, 재산조성비 감소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5,936,186	6,364,500	▲428,314	- 보조금, 이월금 수입, 인건비, 업무추진비, 사업비 증가 - 운영비 감소
의왕	마리아의집	201,310	209,310	▲8,000	- 인건비, 운영비 증가 - 사업비 감소

• 이사 이경희 :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청합니다.

이사 서순원, 원안의 승인을 동의하다.

이사 한보부, 이경희, 이민숙, 이사 서순원의 동의안에 찬성하다.

의장 한지영, 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 2025년 본 예산(안) 승인하는 안을 원안대로 의결 선포하다.

<제4 안건. 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심의>

의장 한지영, 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을 심의 상정하고 이민숙 이사에게 제안 설명을 요구하다.

•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설명

이사 이민숙: 성동보호작업장, 광명시립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으로 의안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성동보호작업장

- 1) 윤리경영을 인권경영으로, 윤리위원회를 인권경영위원회로, 이용자를 이용인으로 변경
- 2) 서비스 규정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p>2. 윤리경영</p> <p>제3조 용어의 정의</p> <p>3.1 윤리경영 시설이 공동선 실천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적 경영원칙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 업무영역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p> <p>3.2 직원 직원은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시간제 직원을 말한다.</p> <p>3.3 이용자 이용자는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용 가족,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을 모두 포함한다.</p>	<p>2. 윤리경영</p> <p>제3조 용어의 정의</p> <p>3.1 인권경영 시설이 경영활동 전반에서 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공동선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p> <p>3.2 이용인 이용인은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인뿐만 아니라, 이용 가족,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을 모두 포함한다.</p>
<p>10. 서비스</p> <p>서비스 규정 변경</p>	<p>10. 서비스</p> <p>4.14 이용료 및 식비</p> <p>9)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참여하는 훈련장애인은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p>
<p>10. 서비스</p>	<p>10. 서비스</p> <p>4.18 장애인일자리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수행할 경우, 시설 이용인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이용인은 시설과 사전협의없이 본시설이 아닌 곳에서 개인적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사전협의 없이 참여할 경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3)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은 서비스 이용기간에 포함되어 산정된다. 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 서비스 이용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종결 후 6개월까지 시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6개월 기간동안 취업 및 타시설 전이를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한다.

■ 광명시립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 1) 이용료 변경
- 2) 이용인(가족) 명칭 변경
- 3) 이용인 재대기 규정 삽입
- 4) 서비스 중도종결 일부 삭제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서비스관리 규정		
제5장 이용 료	<p>제16조 (이용료 수납)</p> <p>1. 이용료는 1개월을 기준으로 총 220,000원을 납부한다.</p> <p>① 1인 월 이용료 : 110,000원</p> <p>② 1인 월 중식비 : 80,000원(4,000원*20일)</p> <p>③ 1인 월 간식비 : 30,000원(1,500원*20일)</p> <p>④ 1인 월 셔틀비(왕복) : <u>30,000원</u> (해당자)</p> <p>2. 셔틀을 이용할 경우 별도 <u>30,000원</u>을 납부한다.</p>	<p>제16조 (이용료 수납)</p> <p>1. 이용료는 1개월을 기준으로 총 220,000원을 납부한다.</p> <p>① 1인 월 이용료 : 110,000원</p> <p>② 1인 월 중식비 : 80,000원(4,000원*20일)</p> <p>③ 1인 월 간식비 : 30,000원(1,500원*20일)</p> <p>④ 1인 월 셔틀비(왕복) : 50,000원 (해당자)</p> <p>2. 셔틀을 이용할 경우 별도 50,000원을 납부한다.</p>
제8장 대기 자 관리	<p>제28조 (재대기)</p> <p>1. 서비스 이용 기간 만료로 종결이 되었을 때, 이용인(가족)이 희망할 경우 서비스 재대기 할 수 있으며 재대기일은 종결일자 다음날로 한다.</p>	<p>제28조 (재대기)</p> <p>1. 서비스 이용 기간 만료로 종결이 되었을 때, 이용인(보호자)이 희망할 경우 서비스 재대기 할 수 있으며 재대기일은 종결일자 다음날로 한다.</p> <p>2. 서비스 이용 기간 중, 이용인(보호자)의 희망으로 중도 종결이 되었을 때, 서비스를 재대기 할 수 있으나, 재대기일은 기존 서비스 종결일자 다음날로 한다. 단,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 바로 재대기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나, 이용기간은 기존 서비스 계약 종료일까지로 적용된다.</p>
제9장 서비 스 종결 및 사후 지도	<p>2. 중도종결</p> <p>①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는 경우 한 달 전에 종결신청서를 제출하며, 한 달 기준으로 이용료를 납부한다. 단, 중도종결 이후 재대기 기간을 거쳐 <u>6개월 이내 재 입소시 이용 기간은 이전 잔여 기간을 적용한다.</u></p>	<p>2. 중도종결</p> <p>①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는 경우 한 달 전에 종결신청서를 제출하며, 한 달 기준으로 이용료를 납부한다. 단, 이하 삭제</p>

■ 수정노인종합복지관

- 1) 부서의동으로 인한 조직도 변경, 2) 명칭·용어 변경에 따른 규정 개정, 3) 현시점에서 적용하고 있는 현황에 맞게 규정 개정(공석처리사항, 여비 등)
- 4) 법령의무교육 추가를 반영한 규정 개정, 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내용 추가, 6) 이용자 인권보호 규정으로 변경 개정(기존 인권침해 예방규정)
- 7)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윤리강령 삭제, 8) 기타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규정 개정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	<p><별표1> 조직구성</p> <p>·수정노인종합복지관</p> <pre> graph TD A[법인] --> B[관장] A --> C[성남시] A --> D[운영위원회] B --> E[총무부장] B --> F[복지부장] E --> G[운영지원팀] E --> H[운영관리 (인사·재정·시설)] E --> I[회계] E --> J[경로식당 (임대·발상)] E --> K[자원봉사관리사업] F --> L[기획홍보팀] F --> M[지역복지연계사업] F --> N[홍보사업] F --> O[연구개발사업] F --> P[후원사업] F --> Q[인어재활사업] F --> R[환경보호프로젝트] F --> S[교육문화팀] F --> T[회원관리사업] F --> U[노인종합상담사업] F --> V[평생교육지원사업] F --> W[노인자원봉사사업] F --> X[노인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 F --> Y[노인복지회] F --> Z[정서지원사업] F --> AA[사회관리사업] F --> AB[특기노인연계사업] F --> AC[노인맞춤돌봄사업] F --> AD[노인맞춤돌봄사업] F --> AE[건강중지원사업] F --> AF[일자리지원사업팀] F --> AG[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F --> AH[노인취업알선센터] </pre>	<p><별표1> 조직구성</p> <p>·수정노인종합복지관</p> <pre> graph TD A[법인] --> B[관장] A --> C[성남시] A --> D[운영위원회] B --> E[총무부장] B --> F[복지부장] E --> G[운영지원팀] E --> H[운영관리 (인사·재정·시설)] E --> I[회계] E --> J[경로식당 (임대·발상)] E --> K[자원봉사사업] E --> L[세류버스] F --> M[기획홍보팀] F --> N[지역복지연계사업] F --> O[주원사업] F --> P[환경보호사업] F --> Q[인지강화센터] F --> R[지역On·오프라인] F --> S[연구개발사업] F --> T[홍보사업] F --> U[교육문화팀] F --> V[회원관리사업] F --> W[노인종합상담사업] F --> X[평생교육지원사업] F --> Y[노인자원봉사사업] F --> Z[노인권익옹호사업] F --> AA[노인복지회] F --> AB[정서지원사업] F --> AC[건강중지원사업] F --> AD[노인맞춤돌봄사업] F --> AE[노인맞춤돌봄사업] F --> AF[일자리지원사업] F --> AG[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F --> AH[노인취업알선센터] </pre>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위임·전결 규정	<p style="text-align: center;">인사관리 규정 제 4장 보직</p> <p>제35조[직무대리] ① 기관의 필요에 따라 직원을 부득이 직제상 상위직에 보직하는 경우 직무대리로 발령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의 요건이 해소될 때에는 당연히 원직으로 환원된다. ③ 직무대리의 직급 및 급여는 직무대리 이전과 동일하다. ④ 재무관(관장) 부제시에는 문서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고 재무관의 업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직무대리자는 차상위직자(총무부장)로 하되 차상위직자의 부제시 재무담당 직원 중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직무 제6절 당직</p>	<p style="text-align: center;">위임·전결 규정</p> <p>제11조[직무대리사항] - 이동 ① 기관의 필요에 따라 직원을 부득이 직제상 상위직에 보직하는 경우 직무대리로 발령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의 요건이 해소될 때에는 당연히 원직으로 환원된다. ③ 직무대리의 직급 및 급여는 직무대리 이전과 동일하다. ④ 재무관(관장) 부제시에는 문서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고, 재무관의 업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직무대리자는 차상위직자(총무부장)로 하되 차상위직자의 부제시 재무담당 직원 중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직무 제6절 당직</p>
복무관리 규정	<p>제27조[당직] 기관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직원에게 당직 및 경비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2. 평일 오전 당직에 대해서는 당직 다음날부터 1주일 이내 30분 늦은 출근 또는 조기 퇴근을 할 수 있으며 토요일 당직에 대하여는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직무 제6절 당직</p>	<p>제27조[당직] 기관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직원에게 당직 및 경비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2. 평일 오전 당직에 대해서는 당직 다음날부터 1주일 이내 30분 늦은 출근 또는 조기 퇴근을 할 수 있으며 토요일 당직에 대하여는 당직수당 또는 대체휴가를 지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직무 제6절 당직</p>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p style="text-align: center;">제7절 휴일 및 휴가</p> <p>제39조[병가]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직원이 휴가를 연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누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때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되었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이용자 및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p> <p>제40조[공가] 기관장은 소속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한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6. 직원교육훈련 관련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직원교육</p> <p>제62조[의무교육] 법령의무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을 여러 문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매년의 목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교육의 형태는 “당해연도 사회복지기관 법령의무교육”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절 휴일 및 휴가</p> <p>제39조[병가]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인 때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직원은 진단서를 첨부한 병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직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2. 전염성 질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이용자 및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의 경우 연간 30일 범위 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40조[공가] 기관장은 소속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한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6.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직원교육</p> <p>제62조[의무교육] 법령의무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을 여러 문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매년의 목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교육의 종류와 형태는 한국사회복지관 협회의 “당해연도 사회복지기관 법령의무교육 안내”에 따른다.</p>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p>제64조[신입직원교육] 신규채용자(임용자)에 대하여 직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지식 및 태도를 습득케 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p> <p>제65조[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기관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p> <p>제67조[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기관장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64조[신입직원교육] 신규채용자(임용자)에 대하여 직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지식 및 태도를 습득케 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기관은 신규채용자(임용자)의 해당 직원에 대한 신입직원교육을 임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24시간 실시한다.</p> <p>제65조[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기관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제67조[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기관장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제71조[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교육] 기관은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제72조[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기관은 직원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제73조[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기관은 직원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p>제71조[교육비용]</p> <p>① 직원이 연수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결재과정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제안제도</p> <p>제76조[우대책]</p> <p>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약 등 각 기관 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p> <p>제78조[집사기준의 운영 등]</p> <p>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창의성 2. 효과성과 효율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p>제74조[자살예방교육]</p> <p>기관은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 내 다양한 계층의 자살 예방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제75조[퇴직연금교육]</p> <p>기관은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한다. 또한, 복지관 내 직원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퇴직연금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p> <p>제76조[교육비용]</p> <p>① 직원이 연수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결재과정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제안제도</p> <p>제81조[제안대책]</p> <p>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약 등 각 기관 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p> <p>제83조[집사기준의 운영 등]</p> <p>제출된 제안은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율성, 효과성, 타당성, 복지트랜드 등의 사항을 기준으로하여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한다.</p>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제2장 국내여비

제2장 국내여비

제10조 [출장여비 지급기준]

제13조 [시내출장]

① 직원이 국내에 출장하는 때의 항공임, 고속철도임, 철도임, 선박임, 자동차임(이하 "교통비"라 한다), 일비,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직원이 국내에 출장하는 때의 항공임, 고속철도임, 철도임, 선박임, 자동차임(이하 "교통비"라 한다), 일비,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임	일비 (1일당)	숙박료 (1박당)	식사 (1식)
관장	2등급	2등급액	실비	실비	20,000	실비	8,000
부(팀)장	2등급	2등급액	실비	실비	20,000	실비	8,000
과(팀)장	2등급	2등급액	실비	실비	20,000	실비	8,000
그 외 직원	2등급	2등급액	실비	실비	20,000	실비	8,000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임	일비 (1일당)	숙박료 (1박당)	식사 (1식)
관장	2등급	2등급액	실비	실비	20,000	실비	9,000
부(팀)장	2등급	2등급액	실비	실비	20,000	실비	9,000
과(팀)장	2등급	2등급액	실비	실비	20,000	실비	9,000
그 외 직원	2등급	2등급액	실비	실비	20,000	실비	9,000

1. 철도운임 구분표 중 2등급은 SRT 보통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2. 숙박료란의 실비는 신용카드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1. 철도운임 구분표 중 2등급은 SRT/ KTX 보통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2. 숙박료란의 실비는 신용카드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여비규정

③ 자동차임은 철도에 의할 수 없는 육로로 여행할 때 또는 교통편 및 여행시간 단축 상 부득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삭제>
④ 일비는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출장시간이 일 4시간을 초과할 경우 1일 정액을 지급하고, 출장시간이 4시간 이하일 때 1일 정액의 50%만 지급한다. 이때 4시간 이내 출장임에도 관내(성남시내) 출장일 경우에는 시내교통비만을 지급한다. 또한 관내 출장의 경우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당일 출장여비 계산]
당일 귀입하는 출장 시의 여비는 출장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내교통비만을 지급한다. 다만, 시계 외 출장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제외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당일 출장여비 계산]
<삭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6조 [직위 및 직종 구분]

제6조 [직위 및 직종 구분]

① 복지관 직원의 직위 및 직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복지관 직원의 직위 및 직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직위 및 직종	
관장	
부장	
과장	
팀장	
주임	
사회복지사, 사무원, 안전관리원, 환경미화원,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관리치료사, 운전기사

직위 및 직종	
관장	
부장	
과장	
팀장	
대리	
사회복지사, 사무원, 안전관리원, 환경미화원,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관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운전기사

인사관리
규정

제3장 채용

제3장 채용

제26조 [면접]

제26조 [면접]

선발된 채용후보자는 인사위원의 면접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단, 교육프로그램 또는 일시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채용되는 강사의 경우 담당과 부서장, 부장으로 구성된 인원이 서류심사 및 면접을 진행할 수 있다.

1. 선발된 채용후보자는 인사위원의 면접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2. 주 40시간 미만의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 채용에는 외부 인사위원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3. 교육프로그램 또는 일시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채용되는 강사의 경우 담당과 부서장, 부장으로 구성된 인원이 서류심사 및 면접을 진행할 수 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p>시설관리 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시설안전관리체계</p> <p>제4조 [안전관리의 의식제고] 안전관리 의식제고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람은 모두가 “사고는 언제든,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안전관리의식을 항상 유지하고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을 한다.</p> <p>제6조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 확보의무] 기관은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시설안전관리체계</p> <p>제4조 [안전관리의 의식제고] 안전관리 의식제고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람은 모두가 “사고는 언제든,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안전관리의식을 항상 유지하고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마련하고, 대응체계구축을 한다.</p> <p>제6조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 확보의무] 1. 기관은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한다. 2.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수행한다.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 조직 설치 ③ 안전보건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수립 및 위험성 평가, 반기 1회 실행점검(4월, 10월) ④ 안전보건관련 인력, 시설, 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배치, 수행평가기준 수립 ⑥ 근로자 의견 청취절차 수립, 의견청취, 필요 시 개선조치 ⑦ 중대재해발생 대응조치 매뉴얼 수립, 반기 1회 대응조치 여부 점검 ⑧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수립</p>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p>이용자 이용 및 인권보호 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이용자 이용 및 인권침해 예방규정</p> <p>제3조 [이용신청 및 구비서류]</p> <p>① 본 복지관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p> <p>③ 위 구비서류에 더하여, 이용료 감면시에 필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p> <p>제6조 [이용료]</p> <p>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복지관 교육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등급 1~2급 이상인 이용자는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한다.</p> <p>제7조 [회원의 권리]</p> <p>② 복지관 운영사항 및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하여 건의사항이 있는 회원은 각 강의를 통해 월례회의 시 건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급을 요하는 건에 대해서는 담당직원과 상담하도록 한다.</p> <p>제9조 [학대 및 인권침해사항]</p> <p>① 이용자의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과 조치를 통해 복지관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이용자 이용 및 인권보호 규정</p> <p>제3조 [이용신청 및 구비서류]</p> <p>① 본 복지관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현 거주지와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혹은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후 내방하여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p> <p>③ 위 구비서류에 더하여, 이용료 감면시에 필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본인, 장애 중증(1~3등급)의 경우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p> <p>제6조 [이용료]</p> <p>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복지관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중증(1~3등급) 이상인 이용자는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대 4개 프로그램까지 무료수강 - 장애 중증(1~3등급), 국가유공자 본인은 수강료 50% 감면</p> <p>제7조 [회원의 권리]</p> <p>② 복지관 운영사항 및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하여 건의사항이 있는 회원은 각 강의를 통해 건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급을 요하는 건에 대해서는 담당직원과 상담하도록 한다. <개정 2024.12.10.></p> <p>제9조 [인권보호]</p> <p>① 이용자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평등을 누릴 권리, 생존권적 기본권을 침해 받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존재로 본다.</p> <p>② 이용자의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과 조치를 통해 복지관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한다.</p>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윤리규정	<p>제1조[기본정신]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의 변화를 리드(lead)하는 창조적인 선도 기관으로서</p> <p>제1조[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제2조[사회복지사의 블라이엔트에 대한 윤리기준] 제3조[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제4조[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제5조[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p> <p>제 8장 사회복지사 윤리강령</p>	<p>제1조[기본정신]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의 변화를 리드(lead)하는 창조적인 선도 기관으로서</p> <p>④ ESG 경영을 실천한다. 1. E 이로운 환경 복지를 실천한다. 2. S 시니어 중심 복지서비스를 실천한다. 3. G 지속가능한 복지경영을 실천한다.</p> <p>제 8장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삭제></p>

- 이사 서순원 :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청합니다.

이사 이경희, 원안의 승인을 동의한다.
이사 이민숙, 한보부, 서순원, 이사 이경희의 동의안에 찬성한다.
의장 한지영, 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심의하는 안을 원안대로 의결 선포하다.

<제5 안건. 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 취업규칙 개정(안) 승인 심의>

의장 한지영, 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 취업규칙 개정(안) 승인을 심의 상정하고 이민숙 이사에게 제안 설명을 요구하다.

-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
이사 이민숙: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취업규칙 개정으로 의안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수정노인종합복지관

1)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내용 변경(근로기준법 등), 2) 현시점에서 적용하고 있는 현황에 맞게 내용 개정(복무 등), 3) 법령의무교육 추가를 반영한 규칙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p> <p>8. (근로계약)</p> <p>④ 직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보수 규정에 준하여 지급되는 정규직의 경우에는 입사 시 1회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변경 체결할 수 있다.</p> <p>9. (수습기간)</p> <p>①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단, 신규로 채용된 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수습을 면제할 수 있다.</p> <p>③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 업무수행 태도 및 능력 등이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용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복무</p> <p>15. (비상시 출근 및 당직)</p> <p>③ 평일 오전 당직에 대해서는 당직 다음날부터 1주일 이내 30분 늦은 출근 또는 조기 퇴근을 할 수 있으며 토요일 당직에 대하여는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p> <p>8. (근로계약)</p> <p>④ 직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보수 규정에 준하여 지급되는 정규직의 경우에는 입사 시 1회로 한다. 단, 근로계약체결 시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재작성할 수 있다</p> <p>9. (수습기간)</p> <p>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단, 신규로 채용된 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수습을 면제할 수 있다.</p> <p>③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복무</p> <p>15. (비상시 출근 및 당직)</p> <p>③ 평일 오전 당직에 대해서는 당직 다음날부터 1주일 이내 30분 늦은 출근 또는 조기 퇴근을 할 수 있으며 토요일 당직에 대하여는 당직수당 또는 대채휴가를 지급할 수 있다.</p>

개정 전	개정 후
<p>제5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p> <p>27.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⑤ 제1항의 근로일과 무급휴무일, 제3항의 근로시간, 제4항의 휴게시간은 현장 근무지의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달리 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⑥ 기관장 재량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2절 휴일·휴가</p> <p>37. (연차유급휴가)</p>	<p>제5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p> <p>27.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⑤ 1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내 보장해야 한다. ⑥ 제1항의 근로일과 무급휴무일, 제3항의 근로시간, 제4항의 휴게시간은 현장 근무지의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달리 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⑦ 기관장 재량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2절 휴일·휴가</p> <p>37. (연차유급휴가) ⑦ 제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 아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p>

개정 전

개정 후

44. (난임치료휴가)

기관은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기관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2019.12.17.신설>

제10장 교육

44. (난임치료휴가)

기관은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기관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0장 교육

76.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교육)

기관장은 복지관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77.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기관장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에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78. (긴급복지지원 신고자의무교육)

기관장은 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p style="text-align: center;">()</p>	<p>79. (자살 예방교육) 기관장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 내 다양한 계층의 자살 예방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80. (퇴직연금교육) 기관장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한다. 또한 복지관 내 직원이 상시 확인 할 수 있는 장소에 퇴직연금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p>

• 이사 서순원 :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청합니다.

이사 이경희, 원안의 승인을 동의한다.

이사 이민숙, 한보부, 서순원, 이사 이경희의 동의안에 찬성한다.

의장 한지영, 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 취업규칙 개정(인) 승인 심의하는 안을 원안대로 의결 선포한다.



<제6 안건. 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시설장 임·면(안) 승인 심의>

의장 한지영, 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시설장 임·면(안) 승인을 심의 상정하고 이민숙 이사에게 제안 설명을 요구하다.

• 시설장 임·면(안)에 대한 설명

이사 이민숙: 현재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소임하고 있는 시설장 박숙자 수녀가 오는 12월31일로 정년 퇴임하게 됨에 따라, 최석재 수녀를 시설장으로 임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시설명	직책	이름	임명일	면직일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시설장(신임)	최석재	2025.01.01.	
”	” (전임)	박숙자		2024.12.31.

• 이사 한보부 : 정년퇴임을 하시는 박숙자 수녀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청합니다.

이사 서순원, 원안의 승인을 동의하다.

이사 이경희, 이민숙, 한보부, 이사 서순원의 동의안에 찬성하다.

의장 한지영, 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임·면(안)을 승인하는 안을 원안대로 의결 선포하다.

<제7 안건. 법인 산하 유치원 2024학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 승인 심의>

의장 한지영, 법인 산하 유치원의 2024학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 승인을 심의 상정하고 서순원 이사에게 제안 설명을 요구하다.

• 2024학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

이사 서순원: 각 유치원 추경 예산 내용은 붙임의 의안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유치원별 2024학년도 제3차 추경(안)

(단위 : 천원)

유치원명	2024학년도 2차 추경	2024학년도 3차 추경	증감	추경 사유
서울 셋별유치원	1,217,726	1,266,452	▲48,726	- 현월에 맞춰 보조금 및 지원금의 유아학비, 수익자부담금의 수업료 예산 금액 감액 - 세출 현황에 맞춘 전체적인 인건비 금액 조정 - 성립전 예산 편성한 친환경급식 외 목적사업비 삽입
부산 성모유치원	635,131	607,252	▼27,879	-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부담금 현월에 맞게 예상 세입액에 맞춰 감액 - 그 밖의 수입에서 고용, 산재보험 환급액 발생으로 세입액 소폭 증가 - 전체적인 세입액 감액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일반교육활동비 외 모든 과목의 세출 예산액 감액

• 이사 서순원 :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청합니다.

이사 이경희, 원안의 승인을 동의하다.

이사 한보부, 이민숙, 서순원, 이사 이경희의 동의안에 찬성하다.

의장 한지영, 법인 산하 유치원의 2024학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을 승인하는 안을 원안대로 의결 선포하다.

5) 폐회

- 의장 한지영 : 기타 보고 사항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한보부, 이사회회의 폐회를 동의하다.

이사 이민숙, 서순원, 이경희, 이사 한보부의 폐회 동의에 재청하다.

이사 전원 폐회를 찬성하다.

의장 한지영, 2024년 제5차 이사회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아래에 기명 날인하다.)

의안 번호	안 건 명	표결 수				심의결과
		찬성	반대	기권	무효	
제1안	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 2024년 제2,3,4,5차 추경 예산(안) 승인 건	5				원안 가결
제2안	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 2024년 본 예산(안) 승인 건	5				원안 가결
제3안	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 2025년 본 예산(안) 승인 건	5				원안 가결
제4안	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건	5				원안 가결
제5안	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 취업규칙 개정(안) 승인 건	5				원안 가결
제6안	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시설장 암면(안) 승인 건	5				원안 가결
제7안	법인 산하 유치원 2024학년 제3차 추경 예산(안) 승인 건	5				원안 가결

2024년 12월 16일

재단법인성모성심수도회



대표이사 한 지 영 (인)

이 사 한 보 부 (인)

이 사 이 민 숙 (인)

이 사 서 순 원 (인)

이 사 이 경 희 (인)

